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31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18가합2078 손해배상(기)  
 2019가합734(병합) 손해배상(기)  
 2019가합697(병합) 손해배상(기)  
 2019가합727(병합) 손해배상(기)  
 2019가합710(병합) 손해배상(기)  
 2019가합703(병합) 손해배상(기)  
 2019가합680(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김주영, 송성현, 김주연, 임한결

피 고 1. 애플 인코퍼레이티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5014, 쿠퍼티노, 1 인피니트 루프  
 (USA, CA 95014, Cupertino, 1 Infinite Loop)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팀 쿡

2.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901호 (삼성동, 아셈타워)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다니엘디시코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공선출력용바코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유영선, 박찬익, 황병호, 김직수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2. 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원고 목록 '원고'1)란 기재 각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애플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애플'이라고만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로,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 이하 '아이폰'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1)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총 63,767명이고, 소송 진행 도중 961명이 소를 취하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수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원고 번호가 변경되면 원고 특성의 오류나 혼란 등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소를 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순번을 다시 정렬하지 아니하고, 소 제기 당시의 순번을 그대로 기재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변도 받자음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2)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애플코리아'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마케팅, 판매, 사용권 부여, 지원, 유지 및 수리, 개발, 구매, 수입, 수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애플의 자회사이다.

#### 나. 피고 애플의 업데이트 제공 등

1) 피고 애플은 2017. 1. 23. 모델명이 아이폰 6, 아이폰 6플러스, 아이폰 6s, 아이폰 6s플러스, 아이폰 SE인 각 스마트폰 제품(이하 '아이폰 6시리즈'라 한다)에 대하여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을 조절시키는 기능(이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iOS<sup>2)</sup> 10.2.1 버전 업데이트(이하 'iOS 10.2.1 업데이트'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2) 이후 피고 애플은 2017. 12. 2. 모델명이 아이폰 7과 아이폰 7플러스인 각 스마트폰 제품(이하 '아이폰 7시리즈'라 하고, 아이폰 6시리즈와 모두 합쳐 '이 사건 아이폰'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 기능이 포함된 iOS 11.2. 버전 업데이트(이하 'iOS 11.2 업데이트'라 하고, iOS 10.2.1 업데이트와 합쳐서 '이 사건 업데이트'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3)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 당시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이하 '사용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iOS 10.2.1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iPad)의 오류 수정 및 보안 향상을 포함합니다.' 내지 'iOS 11.2에는 애플 페이 캐쉬(Apple Pay Cash) 기능이 추가되어 애플 페이(Apple Pay)로 친구 및 가족 간에 송금하고 금액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도 포함합니다.'라고만 고지하였다.

2) 아이폰의 구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아이폰 고유의 운영체계를 말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피고 애플의 공지문

1)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위 업데이트를 설치한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 애플은 2017.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 예방하기**

약 1년 전 배포된 iOS 10.2.1 업데이트에는 아이폰 6시리즈에서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부하가 최고치에 이를 시 전력 관리를 향상시켜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iOS는 전원 꺼짐을 방지해야 할 경우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대 성능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간혹 앱 실행 지연 및 기타 성능 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iOS 10.2.1 업데이트는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주었으며, 이에 대한 고객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iOS 11.2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7시리즈까지 이 기능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화학적으로 노화된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표준 환경에서의 아이폰 성능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 피고 애플은 2018. 1. 2.과 2018. 4. 4.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추가로 게시하였다.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 예방하기**

배터리 충전량이 낮거나, 화학적 노화가 진행되었거나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 기기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 아이폰에 설치된 이 사건 업데이트의 경우, 기기의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지 않도록 최고 성능을ダイナ믹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관리 기능은 아이폰에만 적용되며 다른 애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성능 관리는 기기의 온도, 배터리 충전 상태, 배터리 임피던스<sup>3)</sup>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작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조작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동합니다.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CPU 및 GPU와 같은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대 성능을 다이내믹하게 관리하여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기의 작업량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한 번에 더 강력하고 빠른 성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시스템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때 성능상의 차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상의 차이는 특정 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 관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형태의 성능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림
-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짐
- 백라이트가 희미해짐(제어 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스피커 볼륨이 -3dB까지 더 낮아짐
- 일부 앱에서 점차적으로 프레임 속도가 감소됨
-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는 카메라 UI에 카메라 플래시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표시됨
- 백그라운드에서 새로 고침되는 앱을 다시 로드해야 실행되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의 주요 작업은 해당 성능 관리 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셀룰러 통화 품질 및 네트워크 처리량 성능
- 캡처된 사진 및 동영상 품질
- GPS 기능
- 위치 정확도
-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기압계와 같은 센서
- Apple Pay

배터리 충전량이 낮거나 기온이 낮은 경우, 성능 관리 변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만약 기기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많이 노화되었다면 성능 관리 변화는 좀 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충전식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사용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과 성능이 감소되어 결국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으로 영향을 받았고 자신의 기기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기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은, 피고 애플의 대표이사 팀쿡과 피고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 다니엘 디시코가 공모하여,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업데이트를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이들을 재물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의 검사는 2019. 12. 30.과 2021. 12. 3.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위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팀쿡과 다니엘 디시코가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 이전에 아이폰의 성능저하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이 사건 아이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형 아이폰을 사도록 유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2, 4,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들

아이폰의 사용자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157,960원<sup>4)</sup>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

3) 임피던스란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이폰의 정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아이폰 6 중 가장 저렴한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 재산상 손해 157,960원 + 위자료 100,000원) 중 일부로서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를 통해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을 영구적·비가역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결함을 야기함으로써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의 기능을 훼손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정보통신시스템에 속하고, 피고 애플이 배포한 이 사건 업데이트는 정보통신시스템인 이 사건 아이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므로, 피고 애플이 사용자들 몰래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및 실행을 유도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업데이트가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저하를 일으킴에도, 피고 애플은 이러한 성능저하사실을 사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실행을 유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 애플코리아는 피고 애플의 자회사이자 한국지사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이폰의 품질, 성능 및 안정성 등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16GB 모델의 정가 789,8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7,960원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주장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 한국 내 사용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데이트의 배포를 막지 아니하였다. 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하여 피고 애플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애플코리아는 피고 애플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아이폰을 구입하면서 피고 애플이 미리 마련해 놓은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피고 애플과 사이에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위 업데이트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명확히 설명, 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재산적 이익과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애플코리아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의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애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아이폰의 성능저하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

#### 1) 피고들 공통

가) 원고들이 피고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이폰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내용에 관한 공지 이전에 이 사건 업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에 불편함을 겪은 사실을 각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아이폰의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성능관리를 위한 것일 뿐 위 아이폰의 효율을 감소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원활한 아이폰 사용을 위하여 개발 및 배포된 것으로서, 타인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과는 개발의 목적 및 사용용도 자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훼손, 멸실 변경, 운용 방해 등의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지 '하드웨어' 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바, 하드웨어인 아이폰은 '정보통신시스템'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에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를 위한 것이고, 실제 설치 이후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므로 위 업데이트의 제작·배포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통상적 용법에 따른 효율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것이고,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이 위 업데이트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면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소비자본법의 규정은 민법이나 다른 구체적 법률에 정해진 고지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민법 등에서의 법리와 다른 독자적인 고지의무나 책임을 창설하는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재산적 법익 침해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까지 침해되었다는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등이 추가적으로 주장·입증되어야만 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 2) 피고 애플코리아

이 사건 업데이트는 피고 애플이 제작·배포한 것이고, 피고 애플코리아는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과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프트웨어인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소송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들과 원고들 소송대리인 사이에 적법한 소송위임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첨부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들의 막도장만 날인한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이후 일부 원고들만이 자필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소송위임장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내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 별지를 바코드 인니다.



2018. 1. 27.부터 2018. 3. 29.까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운영하는 '온라인소송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점, ② 원고들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게시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I-PIN)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위임계약 체결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마련한 소송위임계약서의 전문을 읽고 계약자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I-PIN)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차 본인 인증을 거친 점, ③ 위와 같은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거치면 소송위임계약서에 원고들의 도장이 생성되어 날인되고, 이로써 원고들과 원고들 소송대리인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되는 점, ④ 한편,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 중 본인 인증 과정에서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나, 전체 원고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할뿐더러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생년월일<sup>5)</sup>임이 명백한바, 이는 본인 인증 내역의 작성 과정 등에서의 오류로 인한 오기재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체 본인인증이나 소송위임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였고, 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 중 별지2, 3 각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5) 일부 원고들의 생년이 2026년 내지 203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진위확인용 바코드입니다.



문서 진위확인용 바코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들이 피고 애플이 제작한 아이폰을 사용하였어야 하고, 위 아이폰이 이 사건 업데이트가 적용된 이 사건 아이폰(아이폰 6, 7시리즈)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지2 (입증자료 미제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이폰을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별지3 (이 사건 아이폰 미사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sup>6)</sup>은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업데이트가 적용된 이 사건 아이폰이 아닌 아이폰 5, 아이폰 5C, 아이폰 5S 모델을 각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위 별지2, 3 각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이폰을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별지2, 3 각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1) 피고 애플에 대한 청구

#####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이 사건 아이폰의 훼손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17, 18, 22, 25 내지 31, 34 내지 37, 39, 41호증, 을 제11 내지 13, 17 내지 20, 21, 23, 26 내지 28,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

6) 아이폰 5, 아이폰 5C, 아이폰 5S 모델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 중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도 있으나, 위 원고들은 이미 별지2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지3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의 상시적인 성능저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을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업데이트의 유무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이 동일한 2대의 아이폰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의 고발인이 임의제출한 아이폰 3대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경찰청의 디지털포렌직 담당자는 기존 디지털포렌직과 다른 유형으로써 실질적인 여건상 불가능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과 연구원도 감정대상이 3개 밖에 되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아이폰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미국의 IT 제품의 평가 사이트인 '긱벤치(Geekbench)'에서 아이폰 6s와 아이폰 7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실험을 한 결과,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이 빈번하게 본래 성능의 40 ~ 88% 수준으로 저하됨이 확인되었고,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배터리가 노후화 된 경우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황 이외의 경우에서도 아이폰의 성능이 상시 저하됨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긱벤치의 성능실험이나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의 실험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방법 등으로 진행한 것인지, 그 결과 이 사건 아이폰의 성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능 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하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실험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가 성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나 수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역시 사용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갖춘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운영체제 및 기타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고 멈추는 현상, 터치 등 사용자의 신호 입력에도 이 사건 아이폰이 일체 반응하지 않는 현상, 화면 가로세로 전환 불능 현상 등의 성능 저하 현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22호증의 1 내지 94 영상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소유한 일부 아이폰에 작동 중에 그대로 멈추는 현상, 터치 등의 입력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현상, 액정 화면의 가로세로 전환이 되지 않는 현상, 동영상의 분리되어 일부만이 재생되고 일부는 멈춰버리는 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아이폰의 작동 오류 현상은 피고 애플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공지한 내용(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화면을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거나, 액정조명 및 소리 등이 최고 성능을 내지 못하는 등의 현상)과는 그 형상을 달리하는 점, ② 또한 위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 및 당시 아이폰의 개별적 상태, 조건,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유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위 동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현상이 이 사건 업데이트에 포함된 이 사건 성능조정기능의 실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현상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또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제기된 법적 분쟁에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국가의 관련 법적 분쟁의 결과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저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① 미국에서 이 사건 아이폰을 사용하는 자들이 피고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산호세지부가 피고 애플의 소 각하 신청을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㉔ 미국 연방 절차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소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가 형식적으로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요건사실 조차 주장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신청을 구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애플은 위 미국 집단소송에서의 원고들(이하 '미국 원고들'이라 한다)이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유효적절한 주장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소 각하 신청을 하였던 점, ㉕ 위와 같은 소 각하 신청 절차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본안 및 사실 심리가 진행되지 아니한 채, 미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소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점, ㉖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산호세지부의 위 결정문에도 미국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기재하였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은 미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본안으로 나아가 더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는 절차적 결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점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물론 피고 애플은 위 미국에서의 집단소송과 미국의 34개 주(州)의 행정당국이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 칠레의 이 사건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위 각 소송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㉔ 이는 장기간 계속되는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 등을 피하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피고 애플의 경영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㉕ 위와 같은 합의 결정문에도 피고 애플이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애플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결함이 야기되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결함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이 피고 애플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벌금은 피고 애플이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국의 소비자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이고, 위 결정문에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7)</sup>.

7) 이탈리아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상급심 법원인 국사원(Consiglio di Stato)에서 위 판결의 당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사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법원 잠정인은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작성에 유해하거나 부정적인 속도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답변하기 어렵다. 스마트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④ 한편, 러시아에서 이 사건 아이폰 사용자가 피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법의학연구소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설치된 아이폰 7플러스 제품을 다양한 충전 상태 하에서 감정하였는데, 프로세스 처리율의 변동 수준이 최대편차 통계치를 초과하지 않아 성능저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러시아 연방지방법원은 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는 소비자의 재산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고, 최대 부하 상태에서 아이폰의 전원이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용량이 줄어든 배터리를 고객이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결함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 오히려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마)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화면을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거나, 액정조명 및 소리 등이 최고 성능을 내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내의 전자 부품이 필요한 전력을 배터리에서 순간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학적으로 노화되어 충전 효율이 떨어져 있거나 충전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변 기온이 낮은 경우 등에는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순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작업량이 최고치에 이르게 되면 배터리의 최대 전력 전달 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해야하는 모든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을 조절하는 자체 정책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기기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 애플이 계획되거나 예상된 진부화 또는 운영체제 내 구조적 결함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 또는 기기의 작동에 해를 입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도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위와 같은 경우에 시스템의 일부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아이폰의 온도가 조절되거나 배터리가 재충전되어 최대 전력 전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바, 이 사건 아이폰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능 제한이 상시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최고 성능의 일부만이 조절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성능의 어플리케이션 등이 아닌 전화, 인터넷 검색 등의 통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능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것보다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것이 사용에 있어 더 유용할 수 있는바, 전원이 꺼지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실행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통상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시스템 속도와 같은 성능을 향상시킬수록 배터리의 소모는 더 많아지게 되므로, 사용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대 전력 성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전력관리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다른 전자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아이폰에 한정된 특유한 기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피고 애플은 2018. 3.경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iOS 11.3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통한 성능 제한이 영구적이라거나 변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통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추적용 바코드입니다.



문서 추적용 바코드

하여 최고 성능을 일부 제한된 것이 법질서를 위배한 위법한 행위로서 이 사건 아이폰을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바)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일정한 경우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된다 하더라도, 피고 애플이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구동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온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이폰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능 등에는 일상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게임과 같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히 구동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데,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아이폰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데이트에 포함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아이폰의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작동되는 것으로, 사용자로서는 위 성능조절기능이 없었다면 원하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하여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아이폰의 전원 자체가 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바, 사용자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원하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실행만이 사용자로 하여금 고성능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 2862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48조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전달·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아이폰에 설치되어 해당 아이폰 내에서만 실행될 뿐이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아이폰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위 아이폰의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은 상호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휴대용 개인 단말기에 불과한 이 사건 아이폰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른 전제에 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여부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물품 등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제1조),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제4조),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19조 제2항, 제3항)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은 소비자의 위해나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할 사업자의 일반적·추상적인 책무를 확인한 것으로, 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의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의 고지의무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객들에게 고지하여 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 2). 다). (2). (나)항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애플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한 고지의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소결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 (1)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로부터 위 아이폰의 사용등록 및 iOS 업데이트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애플 iOS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귀하의 iOS DEVICE를 사용하기 전에 또는 본 사용권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본 소프트웨어 사용권 약관(이하 "사용권")을 유의하여 읽어 주십시오. 귀하는 iOS DEVICE를 사용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함으로써 본 사용권 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본 사용권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iOS DEVICE를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지 마십시오.

### 1. 일반사항

(b) Apple은 Apple의 재량으로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현존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Apple이 출시하는 최신 iOS 또는 iOS Device의 다른 모델들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용권 약관은 Apple이 제공하는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적용됩니다. (생략)

### 7. 보증의 배제

7.4 Apple은 iOS 소프트웨어와 이에 포함되어 있거나 iOS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 또는 제공되는 기능이 귀하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킨다거나, iOS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동작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류가 없다거나, 모든 서비스가 계속 이용 가능하다거나, iOS 소프트웨어 또는 본 서비스의 결함이 수정될 것이라거나, iOS 소프트웨어가 제3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제3자 서비스와 함께 작동될 수 있다라는 등의 iOS 소프트웨어와 본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장애에 대하여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iOS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제3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제3자 서비스뿐만 아니라 Apple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2)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조 발송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수적 의무의 일환으로서, 계약의 목적 내지 보호법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 및 그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조치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채무의 위반이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불완전이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부수적 의무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계약과 관련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조치의 내용 및 이행 여부는, 당해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 형성의 동기 및 내용, 계약이 예정하거나 그 해석상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과 정당성, 관련 법령의 규정,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 (가) 업데이트와 관련된 정보 등이 고지 등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스마트폰은 기존의 전화기능 외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계속하여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로서, 외부와 단절된 채 제품 자체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계속적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인 정보 교환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등 외부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을 일회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편의와 안전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판매 이후에도 스마트폰의 성능이나 보안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업데이트 제공이 스마트폰 제조·판매라는 계약의 주된 급부 의무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통하여 얼마나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스마트폰을 구입함에 있어 유의미하게 고려되는 부수적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의 배포에 있어 고객들이 그 업데이트 여부에 관한 선택권 행사의 당부 내지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는 사항이라면 부수적 의무로서 업데이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고지, 그 전제가 되는 고객 보호, 배려의 각 의무(이하 '이 사건 고지 등 의무'라 한다)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애플의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 등 의무 위반 여부 등

① 우선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고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 애플로부터 이 사건 업데이트의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위 업데이트를 설치하였어야 한다. 피고 애플이 2017. 12. 28. 이 사건 업데이트에 포함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관한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2018. 1. 2.과 같은 해 4. 4. 위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현상 등이 포함된 공지문을 추가로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지가 이루어진 2018. 4. 4. 이전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0 내지 16, 23, 24,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한 고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폰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sup>8)</sup>,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설령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구체적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애플에게 이 사건 고지 등 의무가 있다거나 위 의무 위반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면, 사용자들의 배려 혹은 보호 차원에서 위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 고지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업데이트에 포함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폰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아이폰의 온도가 조절되거나 배터리가 재충전되어 최대 전력 전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동을 멈추게 되고, 이에 따라 다시 해당 아이폰의 최고 성능이 발현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일부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만이 조절될 뿐이고, 전체 아이폰의 성능 전반이 저하된다거나 주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아이폰의 전원 이 예기치 않게 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점 등을 더하여

8)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 등에 관한 것일 뿐이고, 위 증거에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시점 등이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연스 필자를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보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㉔ 또한 이 사건 아이폰의 사용자들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업데이트가 배포된 경위와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특성 및 작동 원리, 발현되는 기능,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이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이폰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더라도 성능의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거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㉕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애플이 이 사건 아이폰의 배터리 관련 결함을 은폐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거나 사용자들로 하여금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㉑ 리튬 이온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노화되면 충전량이 감소하게 되고, 순간적인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배터리의 성능도 저하됨에 따라 기기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질 수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아이폰의 배터리에만 발생하는 현상이거나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㉒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아이폰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의 원인이 노후화된 배터리라고 판단하여, 2018. 4.경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소 발송을 하므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66,000원 이하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㉔ 피고 애플이 신형 아이폰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아이폰보다 먼저 출시된 아이폰 5 등의 모델에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배포하였어야 할 것이나, 아이폰 5 등의 모델에 대하여는 위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특성과 및 작동 원리, 발현되는 기능,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등과 여기에 ㉓ 이 사건 아이폰의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진 경우에는 충전기를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여야만 다시 전원을 켤 수 있었는데,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 외에도 위와 같은 경우 충전기의 연결 없이도 바로 전원을 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불편을 해결하였던 점, ㉕ 피고 애플은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출시된 아이폰 8 등의 모델에서는 설계부터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포함하여 배터리 전력 성능을 측정,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애플은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거나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이 사건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㉖ 물론 피고 애플이 이 사건 업데이트 당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㉓ 피고 애플은 아이폰에 발생하는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배포함에 있어 그 내용을 간략하게 고지하여 왔고, 이는 피고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제조사들이 업데이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고지하는 이유는 제조사가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하는 목적이 결국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애플 역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하여 일부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기는 하나 그보다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더 중한 오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실행되더라도 통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며, 위 기능의 단점보다는 이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나아가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첨단기술의 집결체로써 복잡다단한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고, 각종 기능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 또한 예측이 어렵거나 다양한바,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모든 구체적인 기능이나 기술적인 내용을 고지 받거나 이를 인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조사 역시 이를 모두 예측하여 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피고 애플 역시 업데이트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 등을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계약 제7조 제4항에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킨다거나 오류가 없음을 보증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모두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거래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술과 관련된 고지의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피고 애플의 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귀책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4) 소결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 2) 피고 애플코리아에 대한 청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 가) 인정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애플코리아는 이 사건 아이폰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드웨어 보증서(이하 '이 사건 하드웨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 보증 적용 범위

피고 애플코리아는 애플 브랜드의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아이팟 하드웨어 제품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액세서리("애플 제품")에 대해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매한 날로부터 1년("보증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보증합니다.

#### 보증 적용 제외 범위

(생략) 애플 브랜드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애플이 유통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첨부된 사용권 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고 애플코리아는 애플 제품의 멈춤 또는 오류 없는 작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고 애플코리아는 애플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나)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애플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뿐더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애플코리아는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하드웨어 보증서를 교부한 후, 이 사건 아이폰의 국내 판매와 기기 자체의 외부적 결함 등(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위 보증서에도 피고 애플이 유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아이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로, 피고 애플은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아이폰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하였는바, 이는 피고 애플코리아가 이 사건 아이폰과 관련하여 맡은 위 보증 등의 업무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점, ③ 나머지 원고들 역시 피고 애플코리아가 피고 애플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포함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고, 달리 피고 애플코리아가 위 업데이트의 개발 및 전송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피고 애플코리아가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애플코리아가 이 사건 업데이트의 개발·배포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애플코리아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숙	<u>김 지 숙</u>	
	판사	신유리	<u>신 유 리</u>	
	판사	이학영	<u>이 학 영</u>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32 ~ p.996

원고목록(개인정보 보호조치)





우편물 발송을 바코드입니다.



# 정본입니다.

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정흥민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